

교무위원회 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1998. 9. 1.
개정 2001.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7. 28.
 개정 2016. 1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8조에 의거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입학홍보1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조정실장, 총무처장, 국제교류처장, 산학협력단장, 취·창업지원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1., 2016.7.28., 2016.12.23.>

제4조(의장 등) ① 총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총장 부재 시에는 총장이 지명한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 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3. 각종 위원회의 설·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법정 수업기간 중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제출)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부서별로 사전에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참석위원들이 날인하여 별도 보관한다. <개정 2013.7.1.>

제10조(주관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4. 3. 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 3조(구성), 제8조(안전제출), 제10조(주관 등)의 교무처 명칭은 '교학처', 교무처장의 명칭은 '교학처장',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홍보처장' 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학생처장은 직제폐지로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 3조(구성)의 입학처장 명칭은 ‘입학홍보1처장’ ,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기획처장’ , 국제교류실장 명칭은 ‘국제교류처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 3조(구성)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조정실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